

#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

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학생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2장 학생생활

###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를 손상시키는 경우 해당 교사의 요청 혹은 이를 목격한 이의 신고로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줄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제12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외출증 및 조퇴증)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 등 타인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복장 및 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학교에서 정한 교복 중에서 학생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③ 교복의 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④ 교내생활(등교 후부터 학교 전까지)에서는 명찰 혹은 학생증의 패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에서는 명찰 혹은 학생증을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⑥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⑦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실외화는 자유로운 색상의 간편하고 활동적인 운동화를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거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7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년생활지도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상담교사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④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⑤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년별 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0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1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2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 제23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고정된 자세로 적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교실 밖 분리 조치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훈계·훈육을 시행하기 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시행한다.
- ④ 훈계·훈육은 학생의 동의를 얻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원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됨을 고지하고 해당 부서에 요청한다.
- ⑤ 훈계·훈육의 대상이 되는 특정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 ⑥ 교사가 훈계·훈육 등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

까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6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학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제26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3~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5~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제28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생활안전부장관과 학년부장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

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 내 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심의 절차)**

- ①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에 해당되는 지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등의 보호자,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하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②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 ③ 퇴학처분은 반드시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1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2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

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4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3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4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5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6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8	교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9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10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12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13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
14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15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16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17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	-

## 제5장 학생회 및 학급회

**제36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고 자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중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 집행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가 정지된다.

### 제38조(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갖고 활동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본 회의는 제3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지역 사회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과 건전한 동아리 활동
5.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6. 학교 교칙 제·개정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활동
7. 학생의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복지,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8.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 제40조(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

- ①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에 따라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본 회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자문위원회를 두고, 학생회 활동 사전, 사후에 학생회 활동을 지도·자문한다.
- ③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의 학생회지원비 범위 내에서 학생회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41조(활동의 제한)

- ① 학생회는 학교장의 직무에 관한 행정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2조(회칙의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4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본 교내에 둔다.

### 제44조(임원의 구성과 직무)

- ① 임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 부서를 대표하고 그 부의 업무를 집행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5조(임원의 자격)

-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성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
  1. 평소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2. 입후보 및 임명시 징계를 받고 있지 않거나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완료한지 3월이 지난 학생

### 제46조(임원의 선출)

- ① 학생회 회장과 1·2학년 학생회 부회장은 전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 ② 각 부서의 부장은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조언을 받아 학생회장이 추천하며 각 부서의 차장은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각 부서의 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회장이 각각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4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장단 임명일로부터 차기 학생회장단이 임명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 ② 학교장은 부득이한 경우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8조(부서)

- ①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서를 조절할 수 있다.
  1. 총무부 : 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산을 관리하며 학생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부서
  2. 학습부 :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부서
  3. 환경부 : 학교 내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학교 단장에 노력하는 부서
  4. 봉사부 : 교내 및 교외의 모든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부서
  5. 체육부 :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부서
  6. 인권부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캠페인 및 의식함양에 노력하는 부서
  7. 홍보부 : 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본교를 알리고 안내하는 부서
  8. 정보부 : 학교 내 알림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부서
  9. 장체부 : 동아리 부서 관리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10. 학예부 : 교내에 전반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하는 부서
- ② 부서의 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1인의 지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9조(운영위원회 구성)**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50조(운영위원회 기능)**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회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회의에 부의할 안전에 관한 사항
4. 대의원 회의가 위임하거나 요구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사항

#### 제51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집행)**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제53조(대의원 회의의 구성)

- ① 대의원 회의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학급 대의원은 제47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4조(대의원 회의의 기능)** 대의원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생회의 사업 계획,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생회 회장·부회장의 탄핵권
6. 기타 본 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55조(대의원 회의의 개최와 의결)

- ①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회 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이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의제와 의안을 작성하여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지도·자문을 받아 학생지도·자문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대의원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6조(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③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및 각 부서의 지도·자문위원 등으로 운영지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기능)**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지도·자문한다.

1. 본 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8조(경비)**

- ① 본 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의 학생복지비 중 관련 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경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담당한다.

**제5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도의 8월말까지로 한다.

#### **제60조(예산의 편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 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지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 편성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③ 예산안은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1조(예산의 집행)**

- ① 학생회장은 학생자치부장의 지도·자문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② 예산안의 확정 이 지연되어 학생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생지도·자문위원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 경비의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62조(결산)** 임기 만료일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6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학생 운영지도·자문위원회의 지도·자문을 받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별 3명의 반장으로 구성되 반장이 후보자일 때는 부반장이(이하 대표 순)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 업무 종사원을 겸한다.

#### **제64조(선거권)**

- ① 선거권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 집행중인 회원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②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치한다.

#### **제65조(선거의 시기)**

-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5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쉼워된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의 잔여 임기가 5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쉼워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불가피한 행사 개최, 학사력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2주일 전까지 선거 일시를 공고한다.

#### **제66조(입후보자의 자격)**

- ① 학생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본교의 학생이어야 한다.
- ② 학생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는 학생생활규칙 제45조가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67조(입후보자 등록)**

-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학생회장은 각 학년별, 부회장은 해당 학년 5% 이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추천서 1부
  3. 3인 이내의 참관인 명단
- ②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 및 참관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마감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날까지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선거 운동)**

-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선거전일 17시까지, 선거운동 장소는 교내로 한다. 단, 제44조 2항 내지 3항에 따른 결선투표와 재선거시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 운동에 사용할 벽보(학교홈페이지용 포함)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식(벽보의 종류, 장수, 크기 등)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사진, 공약 구호를 기재한다.
- ④ 선거 운동에 서면의 자료(학교홈페이지용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소견 발표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장소와 일자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최소 1회 개최한다.
- ② 각 후보자는 1인의 찬조 발표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소견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각 후보자 발표 직전에 각 찬조 발표를 실시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소견 발표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투표와 개표)**

-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직접비밀투표로 한다. 단, 학교 상황에 따라 전자 투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투표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기표장소와 투표함, 참관인석 등을 설치하며,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인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공정한 투표를 진행되도록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결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주관하에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개표하여야 한다.
- ④ 각 후보자가 정한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71조(당선자 결정)**

- ①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지체 없이 당선자를 정하여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재선거 및 보궐 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전조 제3항의 경우
  2. 당선자가 제45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입후보자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선거의 현저한 불공정으로 인한 무효를 소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의결한 경우
  4.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5.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 ②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되고 그 잔여 임기가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부회장만이 궐위된 경우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73조(기타 사항)**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기타의 사항은 회칙과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지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4조(학급회)**

- ① 구성 : 반장 1인, 부반장 1인, 대의원 1인, 서기 1인, 각 부의 부장 1인
- ② 부서 : 학급회에는 총무부, 학예부, 체육부, 인권부, 봉사부를 둔다.
- ③ 임원의 입후보 자격 및 임원 자격 정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부반장, 대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있는 자

로, 학급 전체 구성원의 최다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2. 반장, 부반장, 대의원의 입후보자는 입후보 시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고 있지 않거나 징계를 완료한지 3월이 지나야 한다.
  3. 반장, 부반장,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해당 직에서 해임된다.
  4. 본 회칙에 준해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학급단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학생생활안전부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실시하도록 한다.
- ④ 학급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은 학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한다.
  2. 학급회의 사회는 대의원이 맡으며, 권위 및 유고시는 반장이 맡는다.
  3. 학급 임원의 임기는 제47조를 준용한다.
  4. 학급 임원은 담임선생님께 적극 협력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급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급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학급 운영에 적극 노력하지 않을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 심의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 업무 : 학급회는 학급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의제에 따른 실천사항 수립
  3. 건의 사항 발의
  4. 기타 토의 사항
- ⑥ 회의 : 학급회의는 교육 과정상 자치 활동 시간의 정기 회의와 학급 재적의 1/5이상 발의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운영된다.

## 제6장 규칙의 개정

### 제75조(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교사대표 4인, 학생대표 4인, 학부모대표 3인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76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